

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546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0년 2월 10일

제안자 : 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개정(법률 제6002호, '99. 8.31)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(대통령령 제16,672호, '99. 12. 31)에 따라 종전에 연1회 열리던 정기회 제도가 연2회 열리는 정례회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매년 11월 25일 집회하던 정기회를 7월 5일과 12월 5일에 집회토록 함.(안 제2조)
- 나.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된 안건을 심의함.(안 제3조)
- 다.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함.(안 제4조)

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의 집회일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집회일) ①정례회는 매년 7월 5일과 12월 5일에 집회한다. 다만,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

②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8월 1일에 집회한다.

제3조(심의) 정례회에서 심의·의결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제125조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된 안건
2.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제118조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된 안건

제4조(회기)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5일 이내,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.

제5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